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0,759,773	24,022,793
일반회계	747,743,842	22,432,315
특별회계	53,015,931	1,590,478
공기업특별회계	48,301,393	1,449,04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781,308	683,439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520,085	765,603
기타특별회계	4,714,538	141,436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432,614	72,97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930,571	57,917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51,353	10,54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218,24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